

여 성 가 족 부 시 정 요 구

제 목 비지정후원금의 용도의 사용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

내 용
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의7에 따르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후원금 지출금액의 5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다만,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(기관운영비, 직책보조비, 회의비), 법인 회계전출금, 부채상환금, 잡지출,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, 업무추진비 항목중 운영비, 회의비는 15%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.

그런데 ‘○○○○ ○○○(경남 ○○시 소재)’는 2015년도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(회의비) 명목으로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 기관연계 및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비용을 3차(3. 16 / 4. 29 / 7. 3)에 걸쳐 지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

후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○○○○ ○○○단체에 대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